

행정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지침

제정 2020.02.0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행정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의 행정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. 다만, 부속한방병원과 산학협력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원”이라 함은 행정조직의 임무 또는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으로서 상지학원 정관 및 본교 직제규정에 의한 직원, 계약직, 조교 등의 정원을 말한다.
2. “한시조직”이라 함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행정부서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 구성하여 설치하는 행정조직으로서 직제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직을 말한다.

제4조(행정조직 및 정원의 관리원칙) ① 행정조직 및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행정조직은 다른 조직과 기능상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·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.
③ 행정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.

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

제5조(조직) 본교의 행정조직은 직제규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6조(정원표 관리) 행정조직의 정원은 기획평가처장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.

제7조(정원조정 절차) ① 처·실·원·센터·부·팀 등 행정조직의 정원조정은 총장이 정한다.
② 기획평가처장은 부서별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정원표를 변경한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, 직제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개정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③ 행정지원처 등 관련 부서가 기획평가처장으로부터 정원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른 인사·예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무분장의 조정) ① 각 부서내 부·팀간 세부적인 사무분장의 조정은 해당 부

서장이 정한 후 기획평가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에 명시된 행정조직의 사무분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평가처장에게 규정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부·팀원에 대한 사무분장의 조정은 해당 부·팀장이 정한다.

제9조(정원 요구) ① 각 부서장 등은 소요정원을 연 1회 작성하여 기획평가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행정조직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 등이 기획평가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 각 부서장 등이 행정조직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평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안
2. 정원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
3. 업무처리 과정표
4. 해당 업무 실적 또는 계획

③ 기획평가처장은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제출된 각 부서별 소요정원을 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정원표를 확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.

제3장 한시조직의 설치

제10조(승인권한) 각 부서장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기획평가처장과 협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설치절차) ① 제10조에 의하여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시조직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평가처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, 그 결과를 기획평가처장에게 통보한다.

1. 목적 및 필요성
2. 임무 및 기능
3. 편성방안
4. 운영기간 및 기대효과

② 기획평가처장은 한시조직이 설치된 경우 한시조직의 폐지 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원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한시조직에 대한 인사·예산·사무공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행정지원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기간 및 연장) ① 한시조직의 운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승인된 한시조직은 운영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체된다. 다만, 최초 설치목적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어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기획평가처장의 협조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학 통폐합에 따른 한시조직 운영)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의 통폐합에 따라 상지영서대학교 종전 재적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서 '상지영서대 교학처'를 두되,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